

1 산업안전보건제도

가. 노동법 개요

우리나라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하여 회사나 지점 등을 설립하거나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노무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법규는 민법을 비롯하여 유한회사법, 주식회사법 및 세법 등이 있음.

그러나 노무관리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법규는 2001년 12월 26일 제정된 노동법(No.197-FZ)과 러시아연방에서의 외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법(No.115-FZ)(이하 외국인지위법이라 함)임.

러시아연맹 노동법 이외 참고할 수 있는 노동관련 법규로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No.125-FZ)이 있음.

과거 일부 노동관련 법이 다양하게 존재하였으나, 다음의 법규는 2006년 6월 30일 연방법(No90-FZ)에 의거하여 현재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음.

- 단체협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No2490-1)
-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법(No175-FZ)
- 러시아연방 내 근로기준에 관한 법(No181-FZ)

이는 2001년 연방 노동법의 제정과 더불어 노동조합 관련 규정이 노동법으로 편입되어 유사 관련법이 폐지된 것에 기인한 것이나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이 세력화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노력의 일환으로 보임.

러시아연방에서 노무관리를 하기 위해 노동법 규정을 자세하게 검토해야 하고, 피고용인의 법적지위도 확인하여 적법하에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해야 함.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해고 내지 근로계약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해 종속된 근로자의 법적지위를 고려하여 절차를 규정해야 함.

나. 노동법 특징

2002년 발표된 러시아 개정 노동법의 특징 및 최근 2011년 발표될 노동법의 개정 동향은 다음과 같다.

- 과거 시장경제 전환 초기 및 소비에트 시대에 비하여 노사관계에 있어 근로자의 권한이 축소되고 사업주의 권한이 확대되었다는 측면을 언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2002년 개정 노동법도 다른 여타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와 비교하여 근로자 친화적 규정이 다수 포함 됨
예시)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도록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법에 명시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 기타 러시아 법 및 법규와 마찬가지로 형식주의적 절차와 구비서류를 매우 중요시 함
※ 러시아는 관료주의적 성격이 강하므로 노동법은 물론 모든 법집행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반면, 개정 노동법에서는 이를 최소화 하여 노동쟁의 발생 시 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요구되는 서류를 축소하였지만, 실제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추가서류 및 절차는 간소화되지 않고 있음.
- 개정된 러시아 노동법은 근로자 친화적 이지만, 사업주들은 이러한 측면에 따라 오히려 근로계약을 회피하고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에 게 불이익을 주기도 함.
- 2002년 개정 노동법 및 최근 개정된 노동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아직 관료주의적 요소가 남아있고, 법 규정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법규를 준수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다. 노동법 재개정 현황 및 구성

현재 러시아 노동법은 2001년 12월 21일 하원에서 채택되어 26일에 상원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2002년 2월 1일에 발효 (러시아 연방정부는 노동법 체계를 정리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정 준수를 천명함).

노동법 부분 개정 현황

연도	일시	개정법 번호	연도	일시	개정법 번호
2002	7월 24일	No 97-FZ		10월 18일	No 230-FZ
	7월 25일	No 116-FZ		12월 1일	No 309-FZ
2003	6월 30일	No 86-FZ	2008	2월 28일	No 13-FZ
2004	4월 27일	No 32-FZ		7월 22일	No 157-FZ
	8월 22일	No 122-FZ		7월 23일	No 160-FZ
	12월 29일	No 201-FZ		12월 25일	No 280-FZ, No 281-FZ
2005	5월 9일	No 45-FZ		12월 30일	No 309-FZ, No 313-FZ
2006	6월 30일	No 90-FZ	2009	5월 7일	No 80-FZ
	12월 18일	No 232-FZ		7월 17일	No 167-FZ
	12월 30일	No 271-FZ		7월 24일	No 206-FZ, No 213-FZ
2007	4월 20일	No 54-FZ		11월 10일	No 260-FZ
	7월 21일	No 194-FZ		11월 25일	No 267-FZ
	10월 1일	No 224-FZ	2010	7월 27일	No 227-FZ ⁷⁾

주: 2010년 7월 16일 국가하원 채택, 7월 19일 상원 승인 후,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 2010년 7월 27일자 개정법(No227-FZ)의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기관의 공공행정서비스를 향후 “전자 형태”로 제공한다는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노동법에서 이와 관련된 항목을 개정함.

o 2010년 개정사항은 2011년부터 발효됨.

o 상기와 같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No227-FZ)의 제16조에 의거, 러시아연방 노동법의 제399조 항목에서도 근로자는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근로자의 노동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에 제출할 시,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 형태로도 제출 가능하게 되었음.

o 또한 쟁의행위의 당사자 모두는 쟁의행위가 시작된 날 이후 언제든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 쟁의행위의 개시를 통지하고 등록할 권리를 갖는데, 이러한 절차도 서면과 동시에 전자 형태로도 가능하게 됨

러시아 노동법의 구성

편	장	조항	내용
1	1	1~22조 (총칙)	노동법의 목적과 과제, 기본원칙
2	2	23~55조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정부기관 간의 근로부문에 서의 상호관계
3	3	56~90조	근로계약의 내용, 기간, 변경, 해지, 고용절차,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
	4	91~105조	근무시간
	5	106~128조	휴가기간
	6	129~163조	근로자 임금 지불 및 규정
	7	164~188조	근로자 보장 및 보상
	8	189~195조	근로 규율 및 규정
	9	196~208조	근로자 전문 교육 및 재교육, 전문성 향상
	10	209~231조	근로자 보호 규정, 산업재해 조사 절차 및 보상
	11	232~250조	근로계약 당사자의 물질적 책임
4	12	251~351조	개별적 범주의 근로자 근로 조정의 특례
5	13	352~419조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 노동쟁의 해결, 노동법 위반에 대한 책임
6	14	420~424조	종결 규정

라. 노동보호의 개념 및 산업재해

□ 노동보호란 근로활동 중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를 뜻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질병 및 부상을 유발하지 않는 안전한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짐.

□ 러시아 근로자의 노동보호는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의 노동보호기관 및 조직에 의해 관리·감독되고 있음.

- 국가차원에서 노동보호는 러시아연방정부가 직접 또는 그 권한을 위임한 연방행정기관에서 수행함.

- 근로자 수 50인 초과인 사업 또는 기업⁸⁾에서는 노동보호 조건을 준수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보호조직을 두거나 이 분야의 업무 경험이나 관련 지식을 갖고 있는 노동보호분야 전문가를 둘수 있음.

(※ 과거에는 100인 초과인 기업이었음)

- 근로자 수 50인 이하의 기업에서는 기업 생산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동보호조직을 두거나 해당 전문가 직책을 개설함.

(※ 과거에는 100인 이하의 기업에 해당되었음)

- 기업에 노동 보호 조직이나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보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또는 관련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음.

□ 사용자 및(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조직의 제안으로 기업 내 노동보호위원회가 설립됨.

- 동 위원회에는 사용자 대표, 노동조합 대표 또는 기타 근로자 대표조직의 대표가 동등한 입장으로 참여함.

- 동 위원회는 노동보호 조건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공동 대책을 구성하여 사업장의 근로조건과 노동보호 실태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며 노동보호와 관련한 단체협약에 대한 건의 사항을 수집하게 됨.

산업재해 (노동법 제227~229-1조)

□ 근로자가 기업 또는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 수행 시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재해, 직업성 질환 의무 사회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한 사람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는 러시아 노동법에 의하여 조사와 평가를 받게 됨.

- 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해당자는 다음과 같음.

○ 근로계약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 회사에서 생산 실습을 하고 있는 고등 및 중등 전문 교육기관의 학생

○ 의료기관에서 치료 목적으로 작업 활동을 권고함으로써 해당 관련 회사에서 작업 활동을 한 정신질환자

○ 자유를 박탈당하고 근로 지시를 부여받은 자

○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공근로 의무를 수행하는 자

○ 집단 생산 조직 및 기업형 농장의 일원으로 관련 업무에 개인적으로 근로 활동을 수행한 자

- 다음의 경우 산업재해로서 조사를 받게 됨.

○ 다른 사람에 의해 입은 외상, 심한 중독 현상, 일사병, 화상, 동상, 익사, 전류·번개·방사능으로 인한 이상 장애, 곤충 및 동물에 의해 입은 신체 부상, 폭발 및 사고, 건물·축조물·구조물의 붕괴, 자연 재해

- 또한 기타 건강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무 보직을 변경하거나 일시적·지속적인 근무 능력 상실, 근로자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산업재해로서 조사 및 평가받는 시기는 다음의 경우에 건강 이상이 발생한 시기임.

○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의 근로시간(규정된 휴게시간을 포함), 업무 시작 전과

종료 후 생산 장비 및 옷을 정리하는 시간, 근로자에게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 및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 사용자의 지시 또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생산의 목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한 차량 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사업장에서 나올 경우

○ 업무 출장지를 오고 가는 경우

○ 교대 시간 사이 휴게 시간에 교대자로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교대 시간 사이 휴게 시간에 당직을 하는 경우

○ 선박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가 없는 시간에 선박에 머무르는 경우

□ 산업재해 시 사용자는 다음의 의무를 수행해야 함.

- 사고를 당한 사람을 위해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요양 시설로 운송해야 함

- 사고의 확산을 막고 외상을 입히는 요인이 그 외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고 사고도 초래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 조사 시작 전까지 발생 순간에 있었던 상태를 보존하며 그 보존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진 촬영 등 사건이 발생한 상황을 기록해야 함.

- 사고를 당한 사람의 친인척들에게 산업재해에 관하여 신속히 통보하며, 러시아 노동법과 기타 법률이 정한 기관과 조직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함.

- 2인 이상이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 치명적인 결과와 함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는 24시간 내 다음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지님.

○ 회사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 해당 국가근로감독부, 재해 발생 장소의 검사국, 지역 연방행정기관,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파견한 기관 및 조직체, 노동조합의 관찰 담당 부서, 산업재해 담당 보험자로 통보함

- 산업재해가 발생된 후 사후에 심각한 중상, 사망으로 발전된 경우, 사용자는 이러한 경과를 통보받은 후 3일 이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국가근로감독부, 노동조합의 지역연합체, 산업재해를 감독 조사하는 지역 연방행정기관 등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함.

□ 산업재해 조사를 위해 사용자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산업재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위원회는 노동보호 분야 전문가 또는 사용자의 지시로 노동보호 업무 조직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 사용자 대표, 노동조합 기관이나 근로자들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기관의 대표자로 구성됨.

- 사용자 개인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게 위임받은

대표인,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대리인, 노동보호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함.

- 만약 다른 기업체에서 근무 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무를 지시한 사용자가 산업재해의 조사 및 평가의무를 부담함. 이 경우 위원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 근로가 수행되었던 사업장의 사용자 대표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함.

□ 산업재해가 경미한 경우는 조사 및 평가가 3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중상 혹은 사망에 이른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15일 이내 조사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다만 산업재해 상황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거나 의료 진단 결과를 받기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조사기간 연장이 가능함. 단, 15일을 초과해서는 안 됨.

마. 사회보험제도

□ 러시아연방 국가사회보험기금은 자율적인 신용 금융기관으로서, 1991년 1월 1일 설립되었음.

- 소련 붕괴 이전 동 기금의 경영기관은 러시아 독립노동조합의 연방위원회에 설치되었고, 1991년 5월 29일자 임시규정 및 지시에 의해 규율되었음.

- 1991년 12월 소련이 붕괴된 후, 사회보험기금은 배타적 연방소유 재산에 포함되었음.

- 1993년 9월 28일 동 기금의 경영기관은 노동조합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러시아 정부로 이전되었음.

○ 현재 사회보험기금의 법적 지위는 1994년 2월 12일자 명령에 의해 승인된 러시아연방 사회보험기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됨.

□ 사용자는 기업 소재지의 사회보험기금 지역사무소에 가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 제출서류는 ①신청서, ②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③세무당국에 제출한 신고서에 관한 증명서 사본, ④법인설립문서(정관 또는 사업계약서) 사본, ⑤법인설립 결정에 관한 문서 사본, ⑥통계분류표 사본, ⑦기업 경영 자 임명에 관한 사령장, 회계책임자 임명에 관한 사령장, ⑨위임장(신고서 제출을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 등임.

- 신고 후에는 사회보험기금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보험증명서를 교부받으며, 근로자재해보상보험 및 직업병 발생에 대비한 의무사회보험 보험료 납입통지서를 수령하게 됨.

- 향후 은행에 결제용 당좌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해당지역 사회보험기금 사무소장으로부터 '사회보험기금에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사회보험기금 신고서를 법인 등기일로부터 10일 내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5,000 루블, 약 170 달러)이 부과됨.

□ 사용자는 또한 기업 소재지의 연기금 지역사무처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함.

- 제출서류는 ①신청서, ②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③세무당국에 제출한 신고서의 증명서 사본, ④법인설립문서(정관 또는 사업계약서) 사본, ⑤법인설립 결정에 관한 문서 사본, ⑥통계분류표 사본, ⑦기업설립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 등임.

- 신고 후에는 연기금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등록통지서 및 은행 제출용 증명서를 교부받음.

□ 러시아의 모든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국가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기업이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들은 사회보험급여를 요구 할 수 있음.

- 사회보험기금은 일시적인 노동력 상실, 임신 및 출산 급여, 자녀출산에 대한 일괄 급여, 임신 초기의 의료 진찰을 필요로 하는 여성에 대한 일괄급여,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양육 급여, 장례 급여,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에 대한 추가적인 휴일 급여 등을 지급함.

□ 종래에는(2010년 이전) 러시아 국민을 고용한 기업(외국기업 포함)은 급여 지불이 러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지역과 관계없이 근로자급여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만 하였음.

- 사회보장세는 통합사회세(Unified Social Tax), 연금보험(Mandatory Pension Insurance), 산업재해 및 질병에 대한 사회보험(Mandatory Social Insurance) 등이 포함됨.

- 통합사회세는 월 기준으로 부과되며, 세율은 역 누진적으로 ①연간 급여의 280,000 루블까지 26% 적용, ②280,001~600,000 루블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 10% 적용, ③600,000 루블 이상에 대해서는 2%를 과세하였음.

상기 세율에 근거하여 통합사회세에 대한 유효세율은 첫 600,000 루블까지 약 17.4%가 적용되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2%의 고정세율이 적용되었음.

- 연금보험료율은 통합사회세와 마찬가지로 역 누진적으로 부과하였는데,

①연간급여의 280,000 루블까지 14%, ②280,001~ 600,000 루블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 5.5% 적용, ③600,000 루블 이상에 대해 0% 적용되었으며,

연금보험은 통합사회세로부터 공제되므로 사용자의 추가적인 비용은 요구되지 아니 하였음.

-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산재보험의 세율은 러시아사회보험펀드에서 제시하는 사업의 위험률에 따라 0.2%에서 8.5%까지 적용되었음.

- 위험률은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위험도에 따라 결정하였으며, 사회보험료는 월별로 러시아 재정에 납부되고, 신고는 분기를 기준으로 하였음.

□ 그러나 2009년 7월 연방법률 제212호로 「러시아연방 연기금, 러시아연방 사회보험기금, 의무의료보험연방기금 및 의무의료보험지역기금 보험료에 관한 연방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연방법률 제213호로 각종 특별보상 관련 법률의 통합사회세 관련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됨.

- 종전에 통합사회세로 규율되던 사회보장세는 이제 개별 법률에 따른 부담금 또는 보험료로 변경되었음.

□ 즉, 2010년 1월 1일부터 통합사회세는 폐지되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연방의 연기금, 사회보험기금, 의료보험기금의 보험료율이 다음과 같이 적용됨.

<표 IV-4> 연기금, 사회보험기금, 의료보험기금 보험요율(2010년~11년 예정)

	연기금	사회보험 기금	연방의료 보험기금	지역의료 보험기금	전체
2010년	20%	2.9%	11%	2%	26%
2011년	26%	2.9%	21%	3%	34%

자료: 주러시아 한국대사관(2009).

- 상기 보험료율은 2010년 기준 연 소득 415,000 루블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상의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징수되는 보험금은 러시아의 평균 급여 인상을 기준으로 검토될 예정임.

□ 한편, 러시아 국민과 고용계약(employment contract)이 아닌 시민법에 의한 계약(a civil-law contract)을 체결했을 경우, 과거에는 통합사회세와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 피용인에게 적용되는 연방 연기금과 의료보험기금만 부담하면 됨.

- 보험료의 납부는 종류에 따라 고정 요율로 계산되며, 2010년 및 2011년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음.

※ 러시아 사회보장세는 피용인이 아닌 사용자가 지불하며, 러시아 시민법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지불함.

※ 만약 피용인이 러시아에 개인 사업가로 정식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은 피용인을 위해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이러한 경우 개인 사업가들은 개인별 역량에 따라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함.

<표 IV-5> 시민법에 의한 계약 시, 보험료 납부 변경 사항

~2009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월 1일부터	
통합 사회세	• 연간급여의 280,000 루블까지 23.1% 적용	연기금	20%	연기금	26%
	• 280,0001~600,000루 블 급여 9% 적용 • 600,000 루블 이상 2% 적용	연방의료 보험기금	2.1%	연방의료 보험기금	2.1%
연금 보험	비용인 급여에 대해 비슷한 요율이 적용되 며, 이 또한 통합사회 세로부터 공제 가능	지역의료 보험기금	2%	지역의료 보험기금	3%
		전체	23.1%	전체	31.1%

자료: 주러시아 한국대사관(2009).

□ 현재 임시거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임시 방문상태)를 고용하였을 경우, 과거에 사용자는 연금보험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통합사회세는 반드시 부담해야 하였음.

- 그러나 2010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임시방문 상태의 외국 근로자 고용시, 의료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료에 대한 의무가 면제됨.

□ 한편, 사회보장세 납부는 러시아 조세기관 및 사회보장기금에 등록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바, 러시아 법률은 러시아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기업의 대표사무소나 지사에 대하여 사회보장세 의무 설정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